

의안번호	제 72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72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난·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되는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, 명칭, 다른법령과의 관계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기능 및 인력배치 (안 제4조, 제5조)
- 개관·휴관 및 이용방법 (안 제6조, 제7조)
- 이용료 및 입장 및 행위의 제한 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- 재산·물품관리 및 보험가입, 자원봉사자 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: 붙임

## 6. 관련법령 : 붙임

##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·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및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등)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충청북도 안전체험관(이하 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체험관의 위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번지 일원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기능)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예방, 화재의 성상·원리, 초기진압,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
2. 교통사고, 주택안전사고,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

3. 지진 및 여진 대비 탈출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
4. 기도폐쇄,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
5.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·전시
6. 각종 사고·재난의 직·간접 체험을 통한 성별, 생애주기별 안전 문화 확산 및 사고·재난 대처 능력 향상과 유아·어린이·청소년·여성·가족 수련프로그램 등의 운영
7.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
8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체험관 인력배치)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체험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.

1.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3 제11호(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 기준)
2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(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)
3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(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)
4. 그 밖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체험관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월 1일

2. 명절(설, 추석) 연휴

3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
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개관일 및 휴관일을 조정할 때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방법 등) 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.

③ 체험시설별 이용 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 기준, 체험시설 이용 시간 및 횟수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이용료)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제9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
2.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

3.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체험관에 출입하는 사람. 다만, 시각장애인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4.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·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
2.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
3.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
4.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
5.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
② 운영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(재산 및 물품 관리 등) 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·훼손 또는 오손한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체험관의 재산·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보험가입) 도지사는 체험관의 재산·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3조(자원봉사자) 도지사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·운영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 「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문화·여가공간 제공) 도지사는 체험관 주요 시설을 도민에게 문화·여가 공간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난·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

## 2. 비용 발생 요인 :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운영비

## 3. 관련조문

- 보험가입, 자원봉사자 (안 제12조, 제13조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체험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

나. 추계의 전제 : 연간 예상 관람객수(63,000명) 지속증가 예상

다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계	7,299	14,597	14,597	14,597	14,597
보험가입	4,449	8,897	8,897	8,897	8,897
자원봉사자	2,850	5,700	5,700	5,700	5,700

라. 재원조달방안 : 보통세(일반회계 전입금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운영경비 소폭 증가 예상

## 6. 작성자 : 충청북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김혜숙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  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  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  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 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  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  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소방기본법

제5조(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)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, 시·도지사는 소방체험관(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(이하 “소방체험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, 대처,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(이하 “체험교육”이라 한다)의 제공
2.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·전시
3.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
4.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